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단체교섭 업무 매뉴얼

2011. 12. 29.

교육과학기술부
(교원단체협력팀)

목 차

제1장 단체교섭요구에 대한 대응	1
제2장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	5
제3장 교섭요구안 분류	10
제4장 국민여론 및 학부모 의견수렴	12
제5장 단체교섭 결렬 시 대응	14
제6장 단체협약의 체결	17
《붙임》 주요 비교섭 사항 예시	17

교원노조 단체교섭 업무매뉴얼

본 매뉴얼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제6조(교섭및체결권한등) 및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교원노조’)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 간의 교섭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법령 집행의 일관성·형평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장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대응(확인사항)

【관련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 요구 단위

- 단체교섭은 교과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 등에게 교섭요구는 위법한 것으로 불인정

2. 단체교섭 요구 주체

가. 인정 노동조합

-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지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교원노조법 제4조 제2항)

나. 교원노조 대표자 명의의 요구

-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요구는 교원노조의 대표자가 할 수 있다.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 해고된 교원이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이어서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다.
- 다만, 해고된 교원으로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노조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므로 교섭요구를 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2조)

다. 교원노조 대표자 이외 자 명의의 요구

- 교원노조 대표자가 아닌 조합원 명의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소속 교원노조 대표자 명의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노동부, 교원노사관계 업무메뉴얼, 2009, 109쪽 참조)
-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을 위임하여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는다.(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2항)
※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은 일반노조법 제29조 제3항(단체교섭의 권한 위임)에 대해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단체교섭 요구 시기 및 방식

가. 요구 시기

- 교원노조가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 개시 예정일을 명시한 경우, 개시 예정일이 교섭 요구일로부터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이를 인정한다.(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개시 예정일에 반드시 구속되지는 않으므로 사전협의를 통해 적절한 교섭개시일을 협의하도록 함
- 기존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한 기간 중 교섭요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내재되어 있는 평화의무 위반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저한 사정변경이 발생되어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교섭에 응할 수 있다.(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8, 2009.01.28 참조)

나. 요구방식

- 단체교섭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은 교섭요구에는 응하지 않는다.(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 단체교섭의 응낙 여부 통보

- 교원노조가 적법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경우, 이에 대해 응낙하여야 한다.(일반노조법 제30조 제2항, 제81조 제3호)
-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 1(단체교섭 요구 단위), 2(단체교섭 요구 주체)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흠결이 있는 경우, 위반 내용 및 흠결을 적시하여 반력하며 보완을 요구한다.

5. 중앙교섭과 시·도 단위 교섭간의 관계

- 중앙교섭과 시·도 단위 교섭을 실시하는 경우 상호모순 등 교섭상 문제발생이 예상되므로 전국단위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 중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단위 교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부, 「교원노사관계메뉴얼」, 2009. 6. 113쪽 참조)

6.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 교원노조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효력을 만료함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고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함에도 개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경우, 교원간의 근로조건 통일을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다.
(2004. 11. 23, 노동조합과-3297 참조)

【관련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교섭절차)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통보가 있는 때에는 노동관계 당사자는 그 소속원 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내용·교섭위원수·교섭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한다.

1. 사전협의의 개시**가. 사전협의의 개시 시기**

- 교원노조의 정당한 교섭요구에 대해 응낙한 경우, 교섭에 필요한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사전협의의 개시 시기를 교원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전협의의 진행 방법 결정

- 사전협의의 개시 전 교원노조 측과 사전협의의 진행 관련 사항(일시, 개최주기, 장소, 담당자 수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2. 사전협의의 담당자**가. 담당자 결정(소속원 중 지명)**

- 사전협의의 시기 및 절차가 정해지면, 사전협의를 담당할 담당자를 결정하여 교원노조 측에 통보하고, 교원노조의 담당자 명단도 통보받도록 한다.
- 사전협의의 담당자 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의 고유권한이므로 담당자 수만 교원노조와 협의할 수 있을 뿐 담당자의 자격·선정은 필요적 협의 또는 합의사항으로 다루지 않는다.

나. 비조합원이 담당자로 지명된 경우

- 통보된 교원노조 측 담당자 중 비조합원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한다.

※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소속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규정

3. 협의사항

가. 교섭위원 수

- 교섭위원 수는 노사 동수로 하되 10명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표 준 안〉

- ① 본교섭 교섭위원은 노·사 양측 각 8명으로 구성한다.
- ② 실무교섭 교섭위원은 노·사 양측 각 5명으로 구성한다.

※ 주의사항 : 교섭위원의 자격 및 교섭대표 선정은 당사자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될 문제이지, 필요적 협의사항이 아님(노동부, 교원노사 관계 업무매뉴얼, 2009, 107쪽)

나. 교섭의 구성과 기능

- 단체교섭 구성과 기능은 노사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교섭과 실무교섭으로 나누어 구성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본교섭 : 교섭의 개시와 종료 시에 개최하며, 1차 본교섭은 교섭 위원간 상견례, 2차 본교섭은 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한 내용에 대한 단체협약 체결식으로 진행
 - 실무교섭 : 교섭요구안 개별 항목에 대한 실무교섭위원 간의 축조 심의 및 합의

〈표 준 안〉

- ① 교섭 절차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실무교섭에서는 교섭대상에 대한 축조 심의와 합의가 이루어진다.
- ③ 제1차 본교섭에서는 교섭 개시를 선언하고, 제2차 본교섭에서는 실무교섭에서 최종 합의된 사항을 추인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다. 교섭 일정(시간 및 장소)

- 제1차 본교섭은 사전협약에서 단체교섭 관련 절차 및 방법이 모두 합의된 후 노사가 상호 합의한 일시에 개최하며, 제2차 본교섭은 실무교섭이 종료한 후 노사가 상호 합의한 일시에 개최한다.

〈표 준 안〉

- ① 제1차 본교섭은 단체교섭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사전협약이 종료된 후, 노사가 상호 합의한 일시에 개최한다.
- ② 실무교섭은 본교섭 개최 후 3주일 후에 개최하며, 이후 교섭일정은 실무교섭에서 정하도록 한다.
- ③ 노사양측은 교섭을 개최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 상대방 측에 최소 2일 전 통보하여,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 교섭시간은 근무시간 내로 정하고, 2시간을 넘지 않은 범위 내로 설정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1시간 내외에서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하도록 한다.
- 교섭 개최 장소는 가능한 본교섭, 실무교섭 모두 교과부 및 교육청에서 개최할 것으로 협의하되, 부득이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표 준 안〉

- ① 교섭은 15:00시에 시작하여 17:00시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본교섭과 실무교섭은 교육청에서 개최한다.

라. 교섭위원의 통보 방법

- 교섭위원 통보는 교섭예정일 2일 전에 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변동시에만 통보하도록 한다.

〈표 준 안〉

- ① 노·사 양측은 교섭위원 명단을 교섭예정일 2일전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하되 이후에는 변동시에만 통보한다.(교섭위원 명단에는 소속기관 및 단체 또는 학교, 직위,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양측은 상대방의 교섭위원에 대해 소속직원 및 조합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마. 실무간사 및 배석자

- 교원노조와 협의하여 실무간사를 둔다.

〈표 준 안〉

- ①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소속원 및 조합원 중에서 각각 1인씩을 실무간사로 선정한다.
- ② 실무간사는 본교섭과 실무교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진행절차, 교섭진행 방식, 기타 교섭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 ③ 실무간사 명단은 교섭위원 명단과 함께 통보하기로 하며,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 배석자는 둘 수 있되 5명 이내로 하며, 소속원 및 조합원에 한정한다.

〈표 준 안〉

- ① 노사 양측은 합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은 소속원, 노조는 조합원에 한하여 촬영·속기를 위한 5명 이내의 배석자를 둘 수 있으며, 배석자는 교섭대표위원의 동의 없이는 발언할 수 없다.

바. 교섭내용 협의

- 교섭 의제는 사전협의 단계에서 선정하되,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의 교섭사항 이외의 사항은 의제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표 준 안〉

- ① 교섭의제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교섭 전 사전협의 절차에서 노사가 합의한 사안에 한정한다.

사. 교섭 식순

〈1차 본교섭 절차 표준안〉

- 개회 (사회자)
- 국민의례
- 성원보고 (사회자)
- 경과보고 (사회자)
- 교섭위원 소개
- 교육청 교섭대표위원 인사
- 교원노조 교섭대표위원 인사
-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제안 설명 (교원노조)
-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교육청 입장 설명 (교육청)
- 상호 인사 및 폐회

〈2차 본교섭 절차 표준안〉

- 개회 (사회자)
- 국민의례
- 성원보고 (사회자)
- 실무교섭 경과보고 (실무교섭대표위원)
- 교과부·교육청 교섭대표위원 인사
- 교원노조 교섭대표위원 인사
- 단체협약 체결식
- 기념촬영
- 상호 인사 및 폐회

※ 본교섭 시, 반드시 국민의례를 실시한다. 다만 실무교섭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분류시기

- 교섭요구안이 접수되면 즉시 교섭 대상 여부에 대해 분석하여 교섭 대상 및 교섭제외(비교섭)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2. 분류 방법

- 교섭요구안 검토결과, 교섭대상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나 단체교섭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분류하도록 한다.

3. 교섭사항 및 비교섭사항**가. 교섭사항기준**

-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한다.

【일반적 판단기준】

- ① 사용자측 교섭당사자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하고
- ② 집단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 * 개별 조합원의 면직·파면 또는 해임의 취소·철회 및 복직요구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적 권리분쟁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음
- ③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함

○ 의무적 교섭사항

- 보수·수당·상여금 등 임금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

○ 임의적 교섭 사항

- 단체교섭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 조합 활동 관련 사항

※ 학교 내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조합사무실 등 시설편의제공, 교원노조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나. 비교섭사항

○ 교원노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섭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교섭 사항으로 볼 수 있다.

※ 비교섭사항 판단에 있어 공무원노조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교원노조단체협약 분석, 2010 참조)

○ 주요 비교섭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
6.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 《붙임》 주요 비교섭사항 예시

【관련법령】**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④ 제1항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민여론 등 의견수렴)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때에는 여론조사를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개최 등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목적

-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학생·학부모의 학습권·교육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섭창구가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임
- 일반노조법이나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교원노조법에만 규정된 특수한 조항이므로 반드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할 것을 권장함

2. 의견수렴의 주체와 시기

- 주체
 - 노사 양측이 각각 실시 가능하며, 공동으로도 실시할 수 있음
- 시기
 -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노조의 교섭요구부터 교섭체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므로, 사전협의 단계 교섭요구 전에도 의견수렴이 가능함

- 다만,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하여 교섭요구안 확정(본교섭 개시) 후 확정된 교섭요구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의견수렴의 대상

○ 의견수렴 대상

- (필요적) 교섭내용에 의해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장 등 학교경영자, 일반 교사, 학부모(학부모 단체 포함) 등
- (임의적) 교섭내용에 대해 일반적·전문적 자문을 할 수 있는 학계 인사, 공인노무사, 기타 전문가,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

○ 의견수렴 대상조항

- 본교섭 개시의 전제가 되는 교섭요구안 전체에 대해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대상에 따라 대상조항을 달리 할 수 있음
- 특히 노사관계 협상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한 조항(예시)은 국민 여론 및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타당

《 의견수렴 대상조항 (예시) 》

- 노조에 대한 예산지원 및 과도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
- 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경영권·인사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
- 교육정책 결정에 관한 조항
- 학생·학부모, 사립학교 등 제3자 관련 조항

4. 의견수렴 방법

- 법령상 명시된 방법인 여론조사나 공청회 외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도 가능

※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노사 공동으로 의견수렴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공동부담

【관련법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하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10조(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仲裁)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쟁의행위의 금지

- 교원노조는 단체교섭 결렬 등의 노동쟁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교원노조법 제8조)
 - ※ 노동쟁의 : 노사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일반노조법 제2조 제5호)
 - ※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원노조법 제15조 제1항)

2. 노동쟁의의 조정

가. 조정의 신청

-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교과부·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9조 제1항)
-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동쟁의조정신청서와 ① 단체교섭 경위, ② 당사자간 의견의 불일치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내용, ③ 기타 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교원노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나. 조정기간

- 조정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료된다.(교원노조법 제9조 제3항)

다. 조정의 효력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가진다.(일반노조법 제61조 제2항)
- 따라서 조정안 내용이 수용 불가능한 경우 조정안을 거부하여야 한다.
 - ※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는 노사당사자의 자율 결정 사항이므로 조정안을 거부하여도 무방

3. 노동쟁의의 중재

가. 중재의 개시

- 노동쟁의 중재는 ①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②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 개시된다.(교원노조법 제10조)

나. 중재의 효과

- 중재는 조정과 달리 중재안의 수락여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지지 않고, 그 자체로 노사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상 효력있는 처분이므로 당사자는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다. 중재재정의 불복

-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원노조법 제12조 제1항)
 - ※ 중재재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교원노조법 제12조 제4항)
- 기한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이 확정된다. (교원노조법 제12조 제2항)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단체협약의 체결 원칙**가. 유효기간**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일반노조법 제32조 제1항)

나. 자동연장 조항 배제

- 자동연장 조항은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 자동연장협정 : 유효기간 만료 후의 무단협 상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단협 성립 시까지 기존 단협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협정을 말함. 자동연장협정에 의해 기존 단협의 효력이 연장되고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종전의 단협을 해지하고자 하면,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사전통고하고 해지할 수 있음(일반노조법 제32조 제3항)
- 자동갱신협정 : 단협 기간 만료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단협의 개폐나 변경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다시 기존의 유효기간 만큼 효력을 갱신하는 협정을 말함

다. 단체협약 해석에 대한 해설서 작성 또는 보충협약 등은 원칙적 배제

-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해설서 등 작성에 대한 단체교섭은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단체협약 체결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청이 스스로 해설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배포할 수 있다.
-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해 교원노조와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다.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①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단체협약 체결 방식

가. 서면작성

-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일반노동법 제31조 제1항)

나. 서명 또는 날인

- 단체협약은 이를 문서화한 후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일반노동법 제31조 제1항)

3. 단체협약의 신고 및 공유

가. 고용노동부에 신고

-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일반노동법 제31조 제2항)

나.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간의 공유

- 단체협약 체결 후에는 시·도간 단체협약서를 교과부 및 타 교육청과 공유하도록 한다.

《붙임》

【주요 비교섭 사항 예시】

(교과부, 교원노조와 비교섭사항(예시), '09. 12 고용노동부, 교원노조 단체협약 분석, '10. 3 참조)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고교평준화 확대, 무상급식 확대, 교원성과금제도 폐지, 근무평정제 폐지, 농산어촌특
별법제정 및 폐교중단, 0교시 수업폐지, 보육환경개선 및 저출산 대책, 일제고사 표집
실시, 학교단위 교육과정 보장 등(공무원노사관계과-74, 2010. 7. 16)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제·개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노조의 의견을 검토·반영하도록 한다.
- 교육청은 '00교육청교직원복무심의위원회규칙'을 개정할 경우 교원노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 교육청은 교원의 근로 조건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하여 교원노조 공식
입장과 상반되는 지침이나 공문을 시행할 때에는 교원노조의 요구가 있을 시
협의하여 시행한다.

가. 학교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사항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을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의무
를 지고 있는바 학교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
고 이행 여부를 학교평가에 반영한다.
-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교육청이 자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10%이내에서 표집하여 실시
하고 그 외 학교는 평가문항을 CD로 제공한다.
- 학력진단평가 결과는 서열화하지 않고 교수학습에 활용할 환류자료만 제
공한다.
-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중학교 학력진단 평가는 연 2회이내 실시하며, 지역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는 폐지한다.

나. 교원노조와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00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교원노조와 정책협의회를 운영한다.
- 교육청은 단체협약의 이행에 대한 점검과 교육현안 협의를 위하여 교원노조와 협의회를 개최한다.
- 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정책·업무협의회를 연 4회 실시하되, 그 중 2회는 노조별로 1회씩 실시한다.
 1. 동협의회는 어느 일방의 필요 시 협의안건과 함께 협의회 개최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개최 일시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정책·업무 협의회 운영방법은 안건별 해당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는 해당 실·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2회는 교육감이나 쌍방의 양해하에 권한을 위임받아 부교육감이 참석한다.
 3. 협의회와 합의된 내용을 공문으로 시행한다.

다. 자립형 사립고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를 추천하지 않는다.
- 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 희망 신청을 강요하지 않는다.
- 교육청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교원노조 등과 논의한다.

라. 유치원, 특수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초등학교를 신설한 경우에 병설유치원도 함께 설치하고, 기존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설치를 확대하며, 지역교육청별로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교육청은 유치원 교실이 학교 내의 가장 안전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한다.
-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특수학급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학교별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재택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택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재택 학급을 편성·운영한다.

- 교육청은 특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학교가 있는 6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특수교육 대학생의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실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법에 따라 순회교육 대상자에 대한 각 학년의 수업일수 확보에 노력한다.
-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 선진화를 위하여 학습자료, 비품(컴퓨터, 실물화상기, 오디오 등), 실외 종합 놀이대 등의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교육청은 신설유치원 교실의 냉·난방·환풍시설, 전용화장실 시설,세면대, 유희실, 자료실, 운동장 시설 등을 완비하고, 기설학교의 동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완비하도록 행정지도한다.
-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학급당 원아 수를 줄여 나간다.(5세:26명, 4세:20명, 3세:15명, 혼합반:15명).
- 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학급 내에 화장실 및 세면대, 냉난방기 설치에 필요한 소요내역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은 유치원 전용 통학차량을 확대·배치하고 계약 시 반드시 안전요원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의 인사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학교인사위원회 및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한다.
- 각 학교에는 다음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1.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임명에 관한 사항
 2. 교무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3. 연수, 상벌, 파견, 훈·포장에 관한 사항
 4. 교감 및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 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시 학교장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인사위원 중 교사 1인은 교원노조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나. 교사의 배치 및 정원 증원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본청에 보건교사출신의 교육전문직이 최소 1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연수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치원교사는 초등교사와 통합배정하지 않고, 별도의 정원을 배정한다.
-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조합원 징계시 교원노조 의견 수렴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조합원의 조합 활동으로 인한 징계(경고 포함) 발생 시 교원노조와 협의한다.

라. 승진 및 전보 가산점 관련 사항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현행 교육공무원의 승진 가산점 개정 시 교원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교육청은 특수 교육 관련 승진 및 전보 가산점을 폐지한다.
- 교육청은 초등 농촌 학교 근무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와 관련, 도시 개발 및 교통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전체 초등 교원을 대상으로 매년 10월 교원노조가 참여하는 승진 가산점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 교육청은 초등 수업 연구 대회에 대한 별도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희망에 따라 유·무보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되 전보 시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

마. 공립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의 자격에 대한 사항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초등, 중등이 병설된 각 공립 특수학교에서 교장이 초등자격일 경우 교감은 중등자격으로 배치하고, 교장이 중등자격일 경우 교감은 초등자격으로 배치한다.

바. 전보·전직 관련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고등학교 만기 후 중학교로 전보된 자는 2년동안 고등학교로의 전보를 금하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보된 자는 특정 사안 외에는 기교 만기 기간 동안 중학교로의 전보를 금지한다.
- 교육청은 학교장의 교사임용제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계고등학교는 국어·영어·수학과목과 실업계고등학교는 실업과 과목에 한하며, 각 과목의 전보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1인을 임용제청 하도록 한다.
- 교원의 전보인사와 관련된 전보 내신자 조서의 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원노조와 협의한다.
- 교육청은 교사에 대한 학교장 전입요청 규정을 폐지한다.

사. 양성평등 관련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여학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여교원을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가. 교육과정위원회, 심의회 설치 등 교육과정 사항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교육과정심의회에 교원노조가 추천한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은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운영되고 있는 정보·통신활용 교육 시간을 교과부의 지침 범위 내에서 학교별, 학년별 실정에 맞게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은 ‘고교생 민주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참여여부를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
- 교육청은 초등학교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교육감 인정도서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나. 방학 중 방과후 학교, 자율학습, 0교시 등에 관한 사항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방학중에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의 각종 프로그램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자에 한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에서는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한다.
- 방과후 학교운영에 따른 각종 편법·파행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발생 시 교원노조가 조사에 참관할 수 있으며, 상설 장학반 활동 및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한다.

다. 장학지도 개선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단위 학교 대상 장학지도는 연1회로 한다.
-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 교장·교감 자율장학 연찬회 시 환경구성 및 수업공개 등 장학지도를 폐지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장학지도는 유효한 교수·학습자료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형식적인 문서확인과 요식행위를 지양한다.

4 학교 및 교육청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해직교사 원상회복, 교육비리 척결, 노조 전임자 징계금지, 성폭력 추방 예방대책 등
(공무원노사관계과-74, 2010. 7. 16)

가. 감사제도 개선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사안이 발생하여 실시한 특별감사의 결과를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 교육청은 감사결과 공통지적사항을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각급 기관에 배부한다.
- 교육청은 감사참관인 제도를 실시하는 대상기관에 교원노조가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학교 감사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교육전문직을 감사반에 함께 편성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나. 교육예산 편성·운용의 투명성 및 합리성 보장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예산편성이 전체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주적으로 구성된 예산 사정회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활동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는 매점, 식당, 자판기와 농작물, 축산물, 공예품 등의 수익사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학교게시판 또는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게시판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지도하며, 학교복지에 지출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학교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5㎡ 이하의 매점,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학교회계 수입이 증대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예산편성이 전체 교직원의 예산 사정작업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사립학교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서를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다. 학교급식 개선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 높은 급식이 되도록 노력한다.
- 교육청은 각급 학교 중 급식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여 식품 검수, 조리 환경 및 위생, 납품업체 실사, 식비산정과 업체 선정, 급식 모니터링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 지도한다.
- 교육청은 직영 급식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교육청은 위탁 급식 학교에 대한 위생 및 질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급식 납품 계약 시 우리나라(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적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권장한다.
-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급식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한다

라. 교사의 자율성과 수업권 보장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교사의 교재선정과 재구성, 수업방식, 평가, 교육방법의 적용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 교육청은 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하여 형식과 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은 교장단 회의가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한다.

마. 학급편성인원의 적정성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인문계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의 심각한 편차를 해소한다.
- 교육청은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당 학급 수를 초등학교는 최대36학급, 중등학교는 최대24학급이하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 실업계 학교의 학급편성은 정상적인 실험실습을 위하여 학급당 30명 이하로 한다.
- 교육청은 남자 일반계 고등학교와 여자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바. 전문계 교육여건과 활성화 관련한 실무협의회 노조 참여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업교육발전정책협의회에 교원노조에서 추천한 자를 30%이상 포함하여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실업교육 정상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사. 연구시범학교 지정·운영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교육청 지정 및 지역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축소한다.
- 교육청은 공모제에 의하여 연구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한다.
-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 선정 시 선정위원회에 교원노조 추천인이 참여하

도록 하고, 선정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교육청은 연구시범학교 신청 시 학교장이 당해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도록 한다.
-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청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주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를 2007년도부터 20%범위 내에서 지정 운영하도록 한다.
- 교육청은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를 공모제로 운영하되 점차적으로 10%이내로 감축 운영하도록 한다.
- 각 학교가 연구시범 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응모하도록 한다.

5 사립학교에 대한 사항

가. 사립학교 단체협약 효력 적용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본 단체협약은 교육청과 교원노조, 그리고 00광역시 관내 교원 노동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 이 단체협약은 교원노조와 산하 지회·분회 및 국·공·사립학교 교원과 교육청 산하 각급 기관(지역교육지원청·교육기관·학교 등)에 적용한다.

나. 사립학교(유치원) 교사 근무조건 개선 및 정상 근무시간 엄수 지도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각종 연수 기회를 확대하며, 연수비를 지급한다.
- 교육청은 사립교사의 보수가 공립교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교원 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2항에 의거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가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에 준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정상근무시간이 엄수되도록 행정 지도한다
-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교원이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는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공립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사립학교에서도 시설물에 대해 매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사립학교법인 정관의 홈페이지 탑재 및 경영평가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을 법인으로부터 제출 받아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경영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한다.
- 교육청은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의 투명성 차원에서 학교법인과 협의를 통해 법인정관이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탑재되도록 한다.

라. 사립학교 인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교내 인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인사자문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도록 한다.
- 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 조직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이 교원인사에 반영되도록 행정 지도한다.

마.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임용 지양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학과개편, 교육과정변경, 학급감소, 과원교사 예방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사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한다.
-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정원에 미달하여 정식교사를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고 있을 경우, 그 임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토록 지도한다.

바.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결산 홈페이지 공개 지도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사립학교 예산편성 및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그 내용을 예산편성 및 결산 시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한다.
- 교육청은 사립 학교에 학교 회계 예산 및 결산내역 등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연중 공개하도록 한다.
-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에 대한 재정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사학법인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우선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사. 사립학교 교원 신분보장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사립학교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 등의 사유로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립교원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한다.
- 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전문직 진출, 각종 연수 및 포상 등에 있어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과원 과목 교사의 공립채용 시 객관적인 채용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립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도교육청은 전산보조원, 교무업무보조원 등 업무보조원을 공립과 동등하게 배치한다.

6 제3자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

학부모동원 청소금지, 학교발전기금 및 잡부금 폐지, 학부모부담 경비지원, 학생회 지원, 학생회·학부모회 법제화, 비정규교사 지위확보 등(공무원노사관계과-74, 2010. 7. 16)

가. 학생과 관련된 사항

1)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액 및 방법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교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고 중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그 배상 및 보상을 책임지며 해당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로 하여금 학생 안전사고로 인한 발생 피해에 대해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에 100만원 이하 보상액일 경우, 청구서와 치료비 영수증, 학교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이를 지급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액보상(10만원이하) 청구 시, 진단서 첨부를 생략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학생 인권 및 복지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학생의 징계는 적법 절차와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처벌내용 및 과정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고지하고 변론기회를 부여한다.
- 교육청은 학교에서 두발·복장 및 학생 용의규정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 하도록 지도한다.
- 학교지킴도우미 규정준칙 등 학생 생활관련 각종 규정은 학생들의 인격과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도록 한다.
- 각급 학교는 컴퓨터실 담당교사의 업무과중, 시설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는 컴퓨터실을 개방하여 학생들이 컴퓨터와 통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청은 학생 생활규정이 유엔 아동권리 협약과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한다

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학생생활과 관련한 학교교칙의 제·개정 시 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특히 학생 처벌에 있어서는 다음이 규정되도록 지도한다.
 1. 학생처벌의 적법절차를 규정한다.
 2. 처벌내용 및 근거, 불복절차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한다.
 3. 학생 및 보호자의 변론권을 제도화한다.
- 교육청은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회 및 자치활동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학생회 및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지도 한다.
- 교육청은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여 학생대의원회의실과 동아리실을 두도록 하고, 그 외 학교는 연차적으로 두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 교육청은 각급 학교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을 위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학생회장이 선출되도록 하고, 학생회장피선거권을 성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4) 특수학급 학생 관련 내용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특수학급 학생들이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노력한다.
- 교육청은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 치료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6학급당 1명의 치료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5)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1인당)를 다음과 같이 차등 편성되도록 지도한다.
 1. 11학급 이하 : 32,000원 이상/ 2. 12 ~ 17학급 : 29,000원 이상
 3. 18학급 이상 : 26,000원 이상
- 교육청은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되도록 지도한다

나.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 비교섭사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사례 》

- 교육청은 학교에서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학교에서 앨범, 체험학습, 수학여행, 교복, 체육복 등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학교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을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5㎡이하의 매점, 자판기를 장애인에게 사용허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학교회계 수입이 증대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학교에서 앨범과 교복의 구매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한다.
- 교육청은 학교에서 앨범, 체험학습, 수학여행, 교복, 체육복 등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련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지도한다.
- 교육청은 담임이 추천한 저소득층자녀 등에게 수학여행,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비를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